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이학영·조 국·박홍근

진선미 • 김교흥 • 박정현

이정문 • 이수진 • 한정애

김영배 · 전재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.9%를 차지하고, 고용은 경활인구의 4.5%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산업임.

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로 규율하고 있으나,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.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 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이 필요함.

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를 설립할 수있다.
 - 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일 것
 - 2. 대표자가 가맹본부(사업자를 말한다)일 것
 -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가맹점사 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일 것
 - 2.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일 것
 -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연합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연합회(이하 "연합회등"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, 연합회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연합회등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합회

- 등의 설립허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연합회등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연합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연합회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 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다.
- 제15조의3(연합회등의 사업) ① 연합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하는 가맹사업 문화 정착
 - 2. 가맹사업자 간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발생 시 조정·중재 지원을 위한 사업
 - 3. 가맹사업자의 창업ㆍ투자ㆍ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
 - 4. 가맹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창업 등 국제화 촉진
 - 5. 가맹사업발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
 - 6.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· 연구 및 교육사업
 - 7. 가맹사업자의 구매·유통·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
 - 8. 그 밖에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합회등의 목적달성을 위하

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-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다.
- 제15조의4(지도·감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연합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연합회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고, 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- 제15조의5(행정명령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등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등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따라"를 "따라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5조의2(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 합 및 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 를 설립할 수 있다. 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일 것 2. 대표자가 가맹본부(사업자를 말한다)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가 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 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일 것 2.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일 것 3.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것 의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의 것 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, 연합회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- ④ 연합회등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합회등의 설립 허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연합회등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연합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.
- ⑦ 연합회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연합회는 「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해당 가맹점사업 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 부와 거래조건 등을 대신하여

<신 설>

협의할 수 있다.

- 제15조의3(연합회등의 사업) ① 연합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.
 - 1.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하는 가맹사업 문화 정착
 - 2. 가맹사업자 간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발생 시 조정·중재 지원을 위한 사업
 - 3. 가맹사업자의 창업・투자・

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

 공 및 교육
 - 4. 가맹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창업 등 국제화 촉진
 - 5. 가맹사업발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
 - 6.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 사·연구 및 교육사업
 - 7. 가맹사업자의 구매·유통·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
 - 8. 그 밖에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합회등의 목적달 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 는 사업
 -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

<신 설>

<신 설>

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 원 및 보조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지도·감독)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 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등 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합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.

③ 연합회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나회계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고,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행정명령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연합회등의 업무 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 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제18조(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저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	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
	회등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
	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
	합회등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
	항에 따라 연합회등의 해산을
	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ᅦ	18조(업무의 위탁) ①
	따라 제15조의2에 따
	<u>라 설립된 연합회등</u>
	1. ~ 5. (현행과 같음)
	② (현행과 같음)